

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6년 5월 16일

나. 회부일자 : 1996년 5월 16일

3. 제안이유

-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용어 및 조문 정리와
- 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현금수납범위등을 정하고자하는 것임.

※ 지방세법 개정 (법률 제4,995호 '95. 12. 6)

동법시행령 개정 (대통령령 제14,878호 '95. 12. 30)

동법시행규칙 개정 (내무부령 제668호 '95. 12. 30)

4. 주요골자

- 용어의 정리 및 조문정리
 - 내부위임규정 ⇒ 위임규칙
 - 자진신고납부 ⇒ 신고납부
 - 취득세의 신납부기한 30일 ⇒ 30일 [상속으로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 (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)]
 -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 결정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토지관련조문 삭제

○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범위 신설

- 납세고지서1매당 세액(가산금제외) 이 500천원이하인 도세를 징수하는 경우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,

이는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조례의 규정과 상이한 용어 및 불부합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과 세무공무원이 도세를 징수함에 있어 그 현금수납 범위규정을 조례로 신설코자하는 것으로서,

그 주요내용으로는

· 현행조례상의 부과징수사무위임조항중 "내부위임규정"을 "위임규칙"으로하는 자구수정 및 범위위임 근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범위에 있어 그 범위를 500천원이하인 도세를 징수할 경우로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과,

상위법 조항 적용 조문의 수정 및 일부 불부합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,

· 또한 취득신고 및 신고납부조항중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 30일 이내의 제한 규정에 대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로 하고,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내에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그 기한을 확대하고자 함과,

건축물의 신축·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 작성시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 취득한 경우에 그 도급계약서 원본을 과세관청에 제시하도록 하는 조문을 삽입하였으며

.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액 결정기준일 조항을 명시하고 종전의 각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,
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내용이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첨 부

-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